

의안 번호	2442	[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]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6. 30.(월) 정재환 의원 외 4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6. 30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7. 16.(수)

2. 제안설명 요지 (정재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
-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순정)

-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, 사고 발생 시 비용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 보험 가입 지원이 절실함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통약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
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장애인복지법」

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“신체적 장애”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2. “정신적 장애”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
③ “장애인학대”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언어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, 경제적 착취,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④ “장애인학대관련범죄”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.

「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,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